

# 노인인권 보호지침



## 학습목표

1. 노인인권 보호 목적과 권리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2.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해 열거할 수 있다.
3.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응 방법에 대해 열거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노인인권 보호 목적과 권리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요양기관 평가기준

기준 ①급여제공지침 10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 역량관리

|                 |                                                                                           |
|-----------------|-------------------------------------------------------------------------------------------|
|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br>※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br>※ 직원 ·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 있어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
|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
|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 교육 기록
- 현장검증
- 면담

### \* 노인인권 보호 목적과 권리

##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 노인인권 보호 목적과 권리

### 노인인권 보호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 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 노인인권 보호 목적과 권리

###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 당하지 않을 권리



## \* 노인인권 보호 목적과 권리

###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 노인인권 보호 목적과 권리

###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 노인인권 보호 목적과 권리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 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 해야 한다.

### \* 노인인권 보호 목적과 권리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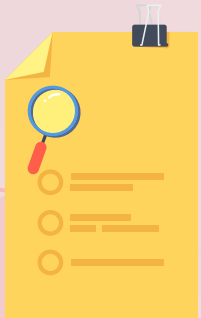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노인인권 보호 목적과 권리

#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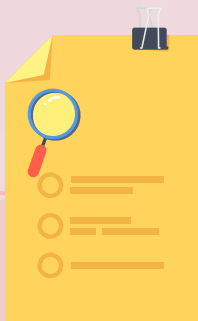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 \* 노인학대

### 노인학대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 노인학대행위자 정의

학대 행위자란 노인복지법 제39조 9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자

연도별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본인  | 240   | 200   | 221   | 204   | 169   |
|     | 4.2   | 3.5   | 3.3   | 2.4   | 2.3   |
| 배우자 | 1,557 | 1,749 | 2,120 | 2,455 | 2,615 |
|     | 27.5  | 30.3  | 31.7  | 29.1  | 34.9  |
| 아들  | 2,106 | 1,803 | 2,288 | 2,287 | 2,092 |
|     | 37.2  | 31.2  | 34.2  | 27.2  | 27.9  |
| 며느리 | 143   | 109   | 123   | 119   | 106   |
|     | 2.5   | 1.9   | 1.8   | 1.4   | 1.4   |
| 딸   | 436   | 438   | 589   | 627   | 620   |
|     | 7.7   | 7.6   | 8.8   | 7.4   | 8.3   |
| 사위  | 34    | 27    | 28    | 42    | 38    |
|     | 0.6   | 0.5   | 0.4   | 0.5   | 0.5   |
| 손자녀 | 134   | 112   | 168   | 172   | 179   |
|     | 2.4   | 1.9   | 2.5   | 2.0   | 2.4   |

출처 : 중앙노인전문보호전문기관

## \* 노인학대

### 노인학대 발생 장소

#### 가정내 학대

같이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생활시설 학대

노인 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 복지주택)과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

#### 이용시설 학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 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등) 같은 이용 시설에서 발생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

(단위: 건,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가정내  | 4,616 | 4,450 | 5,505 | 5,962 | 5,867 |
|      | 89.0  | 84.9  | 88.0  | 88.0  | 86.2  |
| 생활시설 | 380   | 486   | 521   | 536   | 662   |
|      | 7.3   | 9.3   | 8.3   | 7.9   | 9.7   |
| 이용시설 | 41    | 131   | 92    | 87    | 52    |
|      | 0.8   | 2.5   | 1.5   | 1.3   | 0.8   |
| 병원   | 65    | 45    | 37    | 62    | 86    |
|      | 1.3   | 0.9   | 0.6   | 0.9   | 1.3   |
| 공공장소 | 42    | 60    | 39    | 54    | 51    |
|      | 0.8   | 1.1   | 0.6   | 0.8   | 0.7   |
| 기타   | 44    | 71    | 65    | 73    | 89    |
|      | 0.8   | 1.4   | 1.0   | 1.1   | 1.3   |
| 계    | 5,188 | 5,243 | 6,259 | 6,774 | 6,807 |
|      | 100   | 100   | 100   | 100   | 100   |

## \* 노인학대 신고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21년 860건 → 22년 1,125건**

###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 증가 배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신고 의무자 직군 포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 노인인권 보호 지침

## \* 노인학대 신고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노인학대 신고 방법

노인학대 신고 · 상담

1577-1389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24시간 상담

신고인 개인정보  
비밀 보장

# 노인인권 보호 지침

## \* 노인학대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입 과정



학대 발견 및 신고

1577-1389 또는 129 (24시간 상담)



접 수

학대 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 상황 파악



현장 방문 조사

학대 피해 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 노인인권 보호 지침

## \* 노인학대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입 과정



### 학대 사례 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계획



### 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 평가 및 종결

학대 피해 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 노인학대 사례 분류 학대 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한 후 사례 판정 결과 학대 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

####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가벼운 경우

####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 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학대 사례 판정 현황

(단위: 건,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응 급 | 105   | 104   | 165   | 142   | 170   |
|     | 2.0   | 2.0   | 2.6   | 2.1   | 2.5   |
| 비용급 | 3,221 | 3,322 | 3,923 | 4,445 | 4,157 |
|     | 62.1  | 63.4  | 62.7  | 65.6  | 61.1  |
| 잠 재 | 1,862 | 1,817 | 2,171 | 2,187 | 2,480 |
|     | 35.9  | 34.7  | 34.7  | 32.3  | 36.4  |
| 계   | 5,188 | 5,243 | 6,259 | 6,774 | 6,807 |
|     | 100   | 100   | 100   | 100   | 100   |

출처 : 중앙노인전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노인학대 사례분류

일반 사례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해당됨

(단위: 건,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일반 사례 | 10,294 | 10,828 | 10,714 | 12,617 | 12,745 |
|       | 66.5   | 67.4   | 63.1   | 65.1   | 65.2   |
| 증감률   | 18.5   | 5.2    | -1.1   | 17.8   | 1.0    |

출처 : 중앙노인전문보호전문기관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 ▶ 일반사례 특성



#### 지속성

오랫동안  
노인학대 발생

#### 복합성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 원인 존재

#### 반복성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

#### 은폐성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주먹 등으로 때린다.

밀어서 넘어뜨린다.

침대 등으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고함을 지르거나 욕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이성 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성적 부위를 드러내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 경제적 학대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허락 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자기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 방임

부양 의무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돌봄(care service)을 제공하지 않는다.

생활비가 없어도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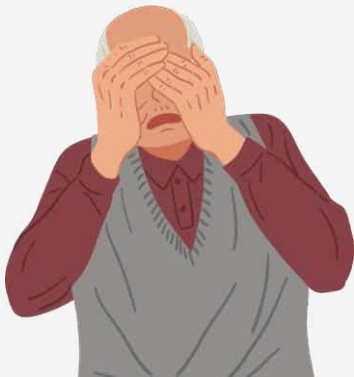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 39조 9)

### **중복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정서적-신체적- 방임 학대유형 (단위: 건,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신체적 학대 | 3,046 | 3,138 | 3,917 | 4,390  | 4,431  |
|        | 37.3  | 38.1  | 40.0  | 41.3   | 42.0   |
| 정서적 학대 | 3,508 | 3,465 | 4,188 | 4,627  | 4,561  |
|        | 42.9  | 42.1  | 42.7  | 43.6   | 43.3   |
| 성적 학대  | 228   | 218   | 231   | 260    | 259    |
|        | 2.8   | 2.6   | 2.4   | 2.4    | 2.5    |
| 경제적 학대 | 381   | 426   | 431   | 406    | 397    |
|        | 4.7   | 5.2   | 4.4   | 3.8    | 3.8    |
| 방임     | 718   | 741   | 760   | 691    | 689    |
|        | 8.8   | 9.0   | 7.8   | 6.5    | 6.5    |
| 자기방임   | 240   | 200   | 223   | 204    | 169    |
|        | 2.9   | 2.4   | 2.3   | 1.9    | 1.6    |
| 유기     | 55    | 41    | 53    | 46     | 36     |
|        | 0.7   | 0.5   | 0.5   | 0.4    | 0.3    |
| 계      | 8,176 | 8,229 | 9,803 | 10,624 | 10,542 |
|        | 100   | 100   | 100   | 100    | 100    |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 노인학대 처벌 규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2)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노인학대 사례 및 유형 등

## 노인학대 처벌 규정

5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의3 제2호)

7 노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유기징역(상해시)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 4 제1호)

### \*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 노인학대 방지법 및 종사자 인지 시 행동

###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 직군) 노인 학대를 인지한 경우

신속히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및 신고한다.

사례 의뢰 시, 학대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 대처해야 한다.

##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 운영 규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관련 전문 외부 강사 초빙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은 수급자가 급여 제공 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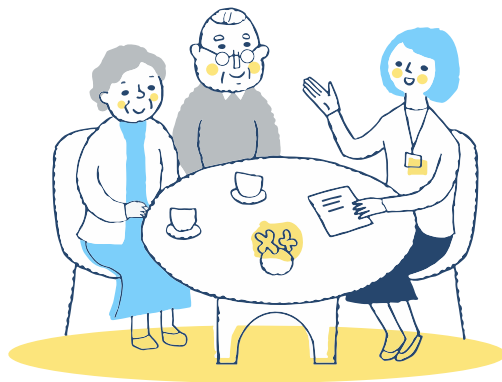
- 시설은 **시설 내에 본 지침을 항상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 제공 과정에서 **학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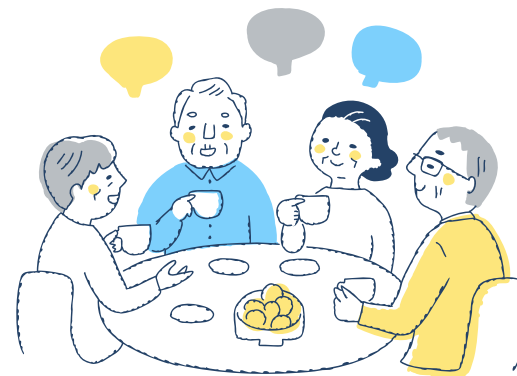
동료의 학대 행위를  
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  
이나 학대 행위 예방 해결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 교환의 장 마련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 방안

노인 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 방안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해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가족 차원의 대응 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가족 차원의 대응 방안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 제도의 도입, 노인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